

1. 개정이유

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반출 행위를 현행화 하는 내용 등으로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399호, 2026.2.27.공포, 2026.8.28.시행)됨에 따라,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과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 개정사항 반영

-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허가(안 제14조 개정)

나. 별지서식 개정

-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(안 별지 제24호서식)
-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(안 별지 제26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 중 “전시계획서(전시 기간, 전시”를 “전시·조사·연구계획서(기간,”으로, “전시 환경”을 “환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전시 기간, 전시”를 “전시·조사·연구의 기간,”으로, “전시 환경”을 “환경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4호서식 신청인 제3호 중 “전시계획서(전시 기간, 전시”를 “전시·조사·연구계획서(기간,”으로, “전시 환경”을 “환경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6호서식 제3호 중 “전시계획서(전시 기간, 전시”를 “전시·조사·연구계획서(기간,”으로, “전시 환경”을 “환경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)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「관세법」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(이하 “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14조(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전시계획서(전시 기간,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한다)</u>	3. <u>전시·조사·연구계획서(기간, 장소 및 환경</u> ----- -----
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	② ----- ----- ----- -----

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1. · 2. (생략) 3. <u>전시 기간,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의 적정성 여부</u> 4. · 5. (생략) ③ · ④ (생략)	----- ----- 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전시 · 조사 · 연구의 기간, 장소 및 환경</u>----- 4. · 5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